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84

발의연월일: 2021. 5. 3.

발 의 자:김태호·성일종·정운천

이채익 · 정경희 · 박대수

김용판 • 한무경 • 윤창현

김형동・강기윤・이양수

서일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증가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물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 및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저 조한 실정임.

2014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률은 저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의 종류가 많고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많으며 월보험료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가입률이 저조함.

이에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

하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물의 공급, 운동・휴식・수면의 보장, 질병과 관련한 신속한 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동물보험의 활성화 및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지원하도록 하며, 매년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동물의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5호의2, 제7조, 제12조, 제22조의2 및 제36조제3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정하여"를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가 부담하는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 의 날로 지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2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	
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	
하다고 <u>인정하여</u> 대통령령으	<u>인정하는 개, 고양이</u>
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u> </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
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민의 책무) ①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 자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u>노력</u>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u>노력하</u> 여야 한다.
 -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 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 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저 ① ~ ④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u>하여야</u> -
 ©
②
하여야
<u>0 5 7 F</u>
3
केले ्र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가

⑤ (생략) <신 설>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 청을 하여야 한다.

부담하는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험료의 지원 방법 및 지 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2조의2(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 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 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 로 지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 ③ -----제12조제7